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제정) 2022.04.29 조례 제1823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940-4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경기도지사·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과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단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방안
5. 지역농산물 이해증진을 위한 도농교류 등의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4호 가목, 나목의 친환경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4호 다목에서 아목까지의 우수 농산물
3. 경기도 내 친환경 농산물
4. 제1호, 제2호 외의 지역농산물
5. 제1호, 제3호 외의 친환경 농산물
6. 시 외 지역의 우수 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공공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8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시설 설치 지원
4.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5. 급식체험프로그램 및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공공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 지원
3.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재편
5.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6. 소비자와 생산자 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 및 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2. 4. 29.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